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징수과

(2017. 9. 25)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 안건명

- 2018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12일(화)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9월 13일(수)

4.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5.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6.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총예산	출연금	산 출 기 초
2012	7,585	7,585	75,850,000천원 × 0.01%
2013	11,502	11,502	75,447,000천원 × 0.015% + 184,000원
2014	11,849	11,848	76,749,755천원 × 0.015% + 336,000원
2015	12,124	12,123	80,820,848천원 × 0.015%
2016	12,664	12,664	84,429,629천원 × 0.015%
2017	14,394	14,394	95,955,040천원 × 0.015%
2018	14,495	14,495	96,632,674천원 × 0.015%

※ 2018년도 출연금(14,495천원) : 구의회 의결 후, 2018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편성

7. 제안이유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 중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방세법 법규해석 및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세 업무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연구 등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5를 출연해야 하는 법정출연금으로 2018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지방세발전기금 목적에도 부합하고

2018년도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책자 및 정보 서비스 혜택을 계속 받음은 물론 제공받은 지방세 관련 업무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우리 구 지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